『국직부대 군 공중전화』

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음성, 영상 공중전화)

2019. 2. 19(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경 고 문

본 제안요청서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함.

2. 소요제기 기관의 승인 없이 타 기관에 제공을 금함.

3. 동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군사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함.

< 목 차 >

Ⅰ. 개 요

1. 사업명 ····· 1
2. 협정기간 ····· 1
3. 사업자 선정방법 ····· 1
4. 참가자격 ····· 1
5. 추진일정 ····· 1
6. 사업추진부대 ····· 1
7. 행정사항 ····· 1

Ⅱ. 제안안내

1. 제안서 작성 지침 ····· 5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6
3. 제안서 목차 ····· 7

Ⅲ. 제안요청사항

1. 일반사항 ····· 8
2. 공중전화 설치계획 ····· 8
3. 분야별 제안요청 내용 ····· 9
4. 행정사항 ····· 11

Ⅳ. 제안서 평가계획

1. 제안서 평가 지침 ····· 13
2. 평가방법 및 절차 ····· 14
3.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 ····· 16

Ⅴ. 평가결과 조치 / 행정사항 ····· 17

Ⅵ. 별 표 ····· 18

Ⅶ. 첨 부(각종양식) ····· 25

Ⅰ 개 요

1. 사업명: 국직부대 공중전화 설치 및 운영

2. 협정기간: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

※ 설치기간: 병사 휴대폰 시범운용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

3. 사업자 선정방법: 제안서 평가/협상에 의한 협정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받지 않는 자

다. 공중전화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필한 업체

5. 추진일정

가. 제안서 공고: 2019년 2월 19일

나. 제안서 접수: 2019년 3월 12일 09:00시 ~ 3월 14일 17:00시(한)

다. 제안서 평가: 2019년 3월 15일(예비일18일)

라. 협상/협정서체결: 2019년 3월 20~26일

마. 사업추진 및 설치검사: 각 부대별 병사 휴대폰 시범운용 시행일로부터 90일

6. 사업추진 부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7. 행정사항

가.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1) 제출기한: 2019년 3월 12일 09:00시 ~ 3월 14일 17:00시(한)

2) 제출장소: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행정안내실(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에 명시된 제출일자와 장소에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가) 제안서 8부(원본1, 사본7), 반드시 원본대조필 표기

나) 제안관련 증빙자료, 기타 입찰관련 자료

나. 제안요청서 취급요령

1) 공지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외 사용 및 타사 제공을 금하며, 본건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현황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의 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2) 신원이 확실한 자에게 본 사업을 전담시켜야 하며, 보안누설로 인한 법규 위반시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여야 한다.

3)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자 선정 후 파기한다.

4) 선정된 업체는 협의서 작성시 제출된 제안서의 원본과 통신사명, 로고등이 기입된 최종 제안서를 제출한다.

다. 관련 문의사항

1) 담당자: 국군지휘통신사령부 5급 서홍권

2) 연락처: 02-6176-6810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의사 소통은 제안사의 공식문서로 한정한다.

Ⅱ 제 안 안 내

1. 제안서 작성 지침

가. “협정담당자”라 함은 공중전화 사업 추진 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의해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기관을 칭한다.

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이하“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 숙지하고 그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사업자에게 있다.

다.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협정담당자”의 요청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최종 결정 후 협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라. 제안되는 물품은 운영개념, 제안요청 내용과 부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과 기술을 제시한다.

마. 제안서의 제시내용은 글, 도면, 그림 등으로 작성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이후에는 추가, 수정, 철회 등 일체 변경을 할 수 없다.

바. 영문약어에 대한 약어표를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용어설명을 첨부 한다.

사. 제안서 제출 후 별도의 의견 제시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만 기술하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는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평가 될 수 있다.

자. 본 사업의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차. 제안공고 이후 추가 제안이 필요한 사안이나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국군지휘통신사령부로 추가 통보한다.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는 수록될 자료의 성격별로 구분하여 2권으로 작성한다.

1) A권: 기본제안서 30매 이내(양면 가능, 목차 및 쪽 번호 표시)

2) B권: 증빙자료, 영어 약어표, 전문용어 설명(매수제한 없음)

3) 제안사의 회사명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회사명 등)를 할 수 없으며, "OO"으로 처리 또는 삭제한다.

* 미준수시 개당 감점(사업자 로고: -2점, 식별제한: -1점, 오탈자: -0.2점)

나. 제안서는 A4용지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본문 글자크기는 12 Point로 작성하고 구성도, 각종 설명서, 각종 증빙자료 등은 PPT, PDF로 작성 첨부할 수 있다.

다. 도면 및 기타 첨부자료 등 A4 용지보다 큰 규격이 필요한 경우 세로치수는 A4 크기를 유지하고 가로는 접어 제출해야 한다.

라. 제안서 각 항목은 순서에 의해 공란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없는 경우는 "미 제안", "해당 없음" 등을 반드시 표시한다.

* 제안서에 공란 발생시 제안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0점' 처리한다.

마. 제안서 내용은 원본과 사본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제안서는 원본 1부 사본 7부, 서약서는 각각 별도봉투에 밀봉하여 제안서 박스에 포함하여 밀봉 후 제출하며, 박스는 통신사의 명칭(로그)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 통신사 명칭 표시를 해야 되는 서류는(서약서) 필히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바.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자: 2019년 3월 12일 09:00시 ~ 3월 14일 17:00시(한)

2) 제 출 처: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행정안내실

3)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4) 문 의 처

부대	계 급	성 명	연 락 처
국군지휘통신사령부	5급	서홍권	02-6176-6810

3. 제안서 목차

1. 제안 개요 1.1 제안개요 1.2 목적 및 범위 1.3 추진방향 등	A권 (비공개 평가)
2. 통신요금 (과금단위 포함) 2.1 선불카드 2.2 후불카드 2.3 수신자 부담	
3. 통신사 능력 3.1 해당지역 회선구성 능력 3.1.1 공중전화 설치계획 적절성 3.1.2 조직 및 인력투입 현황 3.2 유지보수 능력 3.2.1 전담 유지보수 인원 보유 3.2.2 콜센터 운영 능력 3.2.3 정기 예방점검 체계(월, 분기단위) 3.2.4 고장지원 체계	
4. 통신 서비스 4.1 공중전화 관리(부스포함) 4.2 사용자 편의성 4.2.1 선호에 맞는 디자인 4.2.2 사용자 편의성 등 개발	
5. 증빙자료	B권 (참고용)

Ⅲ 제안 요청사항

1. 일반사항

가. 공중전화 협정기간은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나.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운영위원회에서 업체 제안서를 기준으로 음성 1개, 영상 1개의 공중전화 사업자를 선정하여 협정을 체결한다.

다. 협정이 체결된 통신사는 제안된 요금이 현재 적용되는 요금보다 저렴할 때에는 전군 모든 공중전화 설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전군이 동일한 요금으로 적용되도록 조치한다.

라. 선정된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장비와 부수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해 성능보증 방안 등을 제안한다.

마.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만 기술하였으며, 이후 추가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용부대와 협의하여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바. 제안요청서 및 업체의 제안서에 사용된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정의되어야 하며, 상호 이견이 있을시 “협정담당자”의 해석이 우선하고,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2. 공중전화 설치계획

가. 전화기(410대) 및 부스 소요

1) 음성전화

공중전화 소요	부스 형태			
	계	실내		실외
		벽걸이	책상형	전신형
248대 (격오지 5대 포함)	248	20	140	88

2) 영상전화

공중전화 소요	부스 형태(전신형)		
	계	실내	실외
162대 (격오지 5대 포함)	162	147	15

* 음성/영상전화 격오지 설치수량은 부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3) 부대별 음성/영상전화 세부 설치 소요(17개 부대 / 전국)

구 분	설치수량			구 분	설치수량		
	계	음성	영상		계	음성	영상
계	410	248	162	I부대	130	100	30
A부대	21	15	6	J부대	25	13	12
B부대)	14	7	7	K부대	27	15	12
C부대	2	1	1	L부대	17	4	13
D부대	7	4	3	M부대	60	30	30
E부대	16	16	0	N부대	12	6	6
F부대)	3	2	1	O부대	33	18	15
G부대	8	0	8	P부대	4	3	1
H부대	29	13	16	R부대)	2	1	1

* 음성/영상전화 설치, 수량/장소는 부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3. 분야별 제안요청 내용

가. 통신요금

1) 사용요금은 결재 방식별 과금단위와 방식별 요금을 제시한다.

2) 선불카드, 후불카드, 수신자 부담전화

가) 과금단위 : 시내·외, 이동·인터넷 전화의 과금단위를 초단위로 제시한다.

나) 전화요금 : 시내·외, 이동·인터넷 전화의 통화요금은 업체가 정한 과금단위를 기준으로 제시한다.(단위: 원, 소수점 한자리)

※ 예) 공중전화 과금단위 및 요금제안

- 음성전화

구 분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선불카드	0.0원 / 1초	0.0원 / 1초	0.0원 / 1초	0.0원 / 1초
후불카드	0.0원 / 1초	0.0원 / 1초	0.0원 / 1초	0.0원 / 1초
수신자 부담	0.0원 / 1초	0.0원 / 1초	0.0원 / 1초	0.0원 / 1초

- 영상전화

구 분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문자 (영상전화 만 해당)
선불카드	0.0원 / 1초	0.0원 / 1초	0.0원 / 1초	0.0원 / 1초	0원 / 1건당
후불카드	0.0원 / 1초	0.0원 / 1초	0.0원 / 1초	0.0원 / 1초	0원 / 1건당
수신자 부담	0.0원 / 1초	0.0원 / 1초	0.0원 / 1초	0.0원 / 1초	-

나. 통신사 능력

1) 해당지역 회선보유 및 구성능력

가) 설치계획의 적절성

(1) 협정된 기간 내 설치를 목표로 설치개시와 완료시점을 포함한 단계별(현장실사-회선구성-전화설치-안정화 -개통처리) 마스트플랜(격오지 포함)을 제시한다.

(2) 구간별 (본사~최기 국사, 국사~부대 인입, 군 부대 영내) 설치 및 통화품질 유지방안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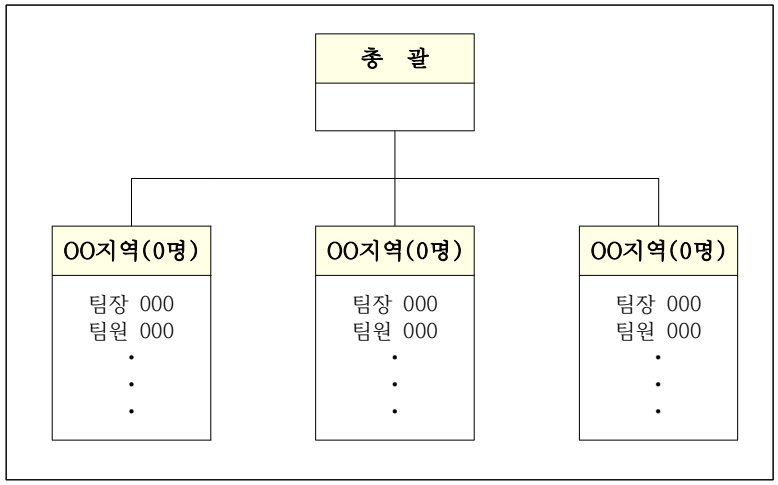
(3) 격오지 기반시설현황 및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단, 미이행시 협정 파기 및 旣 설치된 전량을 철거한다.

* 격오지 : GP, GOP, 해 · 강안소초, 고지통신소, 정보기지, 검문소, 섬지역, 방공진지, 해안중대, 해안기지

(4) 병사휴대폰 시범운용 전군 시행 시기에 따라 공중전화 설치시 기존 사업자와의 설치 및 철거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수행계획서에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한다.

나) 조직 및 투입인력 적절성

(1) 설치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지역별(권역별) 조직 구성도 및 각 팀별 편성 인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2) 유지보수 능력

가) 전담 유지보수 인원 보유

(1) 지역별 통화품질 유지를 위한 전담인력과 기술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편성 / 운용 계획을 명시한다.

(나) 투입인원은 상주와 비상주로 구분하고 개인별 기술력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B권에 첨부하여 제안한다.

구 분	직 책	성 명	기술등급	증빙자료
유지보수팀	*과장*	*홍길동*	*특급*	*B권 O-Opage*
:	:	:	:	:

나) 콜센터 운영 능력

(1) 콜센터 운용 계획(구성도 포함)

(2) 콜센터 인력 운용 계획

다) 정기 예방점검 체계

(1) 정기 예방점검 계획

(2) 사용자 부대에서 시설(전화, 부스) 긴급 이전설치 요청시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라) 고장지원 체계

(1) 고장 발생 유형별 지원체계(조치기간 명시)

(2) 공중전화 고장 사실을 사업자가 먼저 인지하여 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현황 제시

(3) 관제시스템 미보유 사업자는 구성 계획 포함

다. 통신사 서비스

1) 공중전화 관리

가) 청결한 전화기(부스포함) 관리 및 소독방안 제시

나) 전화기(부스포함) 파손 및 손상시 대책

2) 사용자 편의성

가) 부스내 편의시설(음악, 디자인 개선, 조명, 쿠션의자 등) 사적통화 보장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IC카드 사용 보장

다) '나) 항목' 미충족시 IC카드 전환계획 제시

라) 기타 장병복지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

4. 행정사항

가. 제안서 작성 자료 획득을 위한 현장조사 필요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일정과 장소에 출입을 해야한다.

* 출입인원은 최소 인원(2명)으로 제한하고 출입예정자 명단, 출입시간 등 상세 내용을 협정담당자에게 통보

나. 공중전화 통신사업자는 음성 1개 / 영상 1개의 공중전화 사업자를 선정하여 협정을 체결한다.

다. 부대별 사업자가 제안한 요금 중 낙찰된 최저 요금을 사업자가 참여한 전군 공중전화 설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전군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라. 본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협정이 종료되는 기 설치 수량에 대한 협정은 공중전화 설치 완료일로부터 모두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마. 공중전화 설치부지는 장병복지를 목적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제공하며 미선정된 업체는 협정이 종료된 전화기를 선정된 사업자와 협의하에 반드시 철거하여야 한다.

* 미철거시에는 국유시설 무단점유로 간주하여 의법 조치한다.

바. 보안대책

1)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수행 간 국방보안업무훈령, 국직부대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 및 보안 교육과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투입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첨부#6)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추진에 있어, 군사자료를 취급할 경우 반드시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업체는 수행업체 요원 중 작업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 각종 문서 및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나) 업체 인원의 보안 교육 및 필요시 비밀취급 서약 실시

5) 장비 설치시 군사보호구역 (통제구역, 제한구역 등)에 대한 출입은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고 출입예정자 명단, 출입시간, 작업내용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출입 5일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6) PC/노트북, CD, HDD, USB 저장장치, 상용정보통신장비 등을 반입시에는 부대 보안규정에 따른다.

7) 설치 종결 시 사업관리부대에서 제공된 자료 일체를 반납 및 삭제하고 “업체에서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첨부#7)를 대표명의 인감 또는 직인을 날인하여 사업관리부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반출·입 절차를 준수하고 보안유해 여부를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8) 사업추진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첨부#8)를 대표명의 인감 또는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사. 본 사업 간 산출물 작성, 제출

구분	산출물명	주 요 내 용	제출시기	부수
1	제안서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제안업체의 제시안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제출	제안서 제출	8부 (원본 포함)
2	사업수행 계획서	협정이후 제안서와 협정서를 바탕으로 현장 실사를 통해 세부적인 구축계획 일정, 자원 투입계획, 사업관리계획, 위험요소 판단 및 관리방안 등을 작성 후 보고회를 통해 사업관리부대로 제출한다.	협정 후 10일 이내	3부
3	완료 보고서	사업추진경위, 일정, 회선개통, 전화설치내역 및 검수결과, 부대별 개통확인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사업관리부대로 제출한다.	검수 후 1주 이내	3부

Ⅳ 제안서 평가계획

1. 제안서 평가 지침

가. 제안서 평가는 “협정담당자”의 별도 계획에 따라 의거하여 평가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협정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 변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제안서 평가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사업 협정체결 후 위와 같은 사실이 판명될 시는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제출된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업체 간 담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본 사업에서 부적격 처리하고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라. 제안사항 및 관련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기능 있음”, “만족함”, “수용함” 또는 “지원가능”등 모호한 표현은 미 제안 사항으로 간주하여 “0점” 처리한다.

마.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업체의 제안내용과 제시한 근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한다.

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하도급 업체 포함)가 사업 참여시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사. 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 이외에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아.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통보하지 않는다.

2. 평가방법 및 절차

가. 평가시 평가요소에 현저히 미달되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통신사 능력, 사적통화 보장 평가와 요금평가를 실시한 후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1) 평가비율: 통신사업자능력(20%), 통신요금(60%), 통신서비스(20%)

2) 종합평가점수 산출: 사업자능력 + 통신요금 + 통신서비스

3) 계산점수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다. 요금평가 분야

1) 요금평가는 과금단위와 통신요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2) 기준금액은 업체별 제안서에 제시한 요금으로 한다.

3) 통신요금 평가 방법

가) 선불카드, 후불카드, 수신자부담 요금으로 구분하여 평가 후 합산

(1) 과금단위 : 과금단위를 초단위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

(2) 요금평가 : 음성(시외, 이동전화) 통화를 계산식 적용 평가

나) 요금평가는 아래 계산식 적용

(1) 분야별 평가(선불카드, 후불카드, 수신자부담) 평가 계산식

$$\text{분야별 점수} = \text{배점} \times \frac{\text{최저요금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제시 요금)}}{\text{제시요금 (평가 대상업체 제시요금)}}$$

* 요금은 1초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종합평가(선불, 후불, 수신자)

$$\text{요금 총점} = \text{선불카드점수} + \text{후불카드점수} + \text{수신자부담점수}$$

다)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유효

라. 통신사 능력 평가

1) 해당지역 회선구성 능력

가) 사업자가 제시한 기 설치된 기반통신망과 추가 설치 계획 등을 기초로 사업수행 가능여부를 평가한다.(격오지 포함)

나) 서비스 지원, 통화품질, 장애복구시간은 제안서 평가계획 참조

2) 통신사 능력 평가는 세부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우수사업자부터 '수(100%), 우(90%), 미(80%), 양(70%)'으로 평가(점수부여) 하고, 이하 사업자는 '가(60%)'등급 또는 기준이하(0점)를 부여한다.

3) 기타 내용은 '제안요청사항' 및 '공중전화 사업자 선정 평가표' 참조

마. 통신서비스

1) 통신서비스 평가는 세부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우수사업자부터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기준이하(0%)'로 평가(점수부여)한다.
단, 군 요구 충족 시 동일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2) 기타 내용은 '제안요청사항' 및 '공중전화 사업자 선정 평가표' 참조

바. 사업자 선정 방법

1) 운영위원의 평가결과를 사업자별로 점수화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소수점은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적용)

2) 심의결과 총점(능력 + 통신요금 + 서비스)이 높은 0개 사업자를 선정한다.

3)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통신요금 → 통신사 능력 → 서비스 점수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4) 3)항으로도 동일점수일 경우 후불카드→선불카드→수신자전화의 요금점수 순으로 적용한다.

5) 평가시 평가요소에 현저히 미달되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부적격 처리
* 중대한 결함이란 본 제안요청서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3.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 : 별표 참고

V 평가결과 조치 / 행정사항

1. 사업자 결과 통보 / 조치

가. 평가결과 고득점 사업자부터 음성 1개 / 영상 1개의 공중전화 사업자를 협정대상자로 선정하여 유선 통보한다.

나. 협정 대상자로 미선정된 사업자는 개별적인 통보를 하지 않으며, 협정대상자와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협정한다.

다. 최종 음성 1개 / 영상 1개의 공중전화 사업자와 협정 체결이 완료되면,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사업자는 旣 설치된 공중전화를 철거하도록 통보한다.

2. 사업의 유찰

가. 제안서 제출 사업자가 지정된 수(영상 2개 업체, 음성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유찰하고 2회 유찰시 수의협정으로 체결 가능하다.
* 협정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협정 미체결 시 유찰

나. 통화요금의 인하효과가 없다고 판단 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본 사업을 유찰 및 재검토 할 수 있다.

3. 기 타

가. 제안요청서 공고 이후 수정 및 변동사항 발생 시 동일 방법으로 추가 공고한다.

나. 부대 운용 또는 사업추진 간 이견 발생 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정한다.

Ⅵ 별 표

#1. 공중전화 사업자 선정 평가표

#2. 협 정 조 건

별표 #1

공중전화 사업자 선정 평가표(음성)

평가요소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계				100	
통신요금(60)	선불카드	과금단위	• 과금단위 : 시내/시외, 이동전화/인터넷전화 사용시 과금단위(초)를 평가 • 요금 : 시내/시외, 이동전화/인터넷전화 사용 요금을 계산식으로 평가 * 저렴한 요금이 고득점	3	• 과금단위 : 최단시간 제시한 업체를 기준으로 단위시간 평가 * 초당 감점(-0.1점) *적용 예) - 최소 시간제시 업체 기준(3초) - 5초 제시 업체는 -0.2점 감점 • 요금 : 업체제시 최저요금을 1초 기준으로 계산식 적용 * 계산식 = 배점×최저요금 / 해당업체 제시요금 * 적용 예) : 후불카드 이동전화 -A업체(2원) : 60×2원/2원=60점 -B업체(3원) : 60×2원/3원=40점 -C업체(4원) : 60×2원/4원=30점 * 미제시에는 점수 미부여
		시내전화		1	
		시외전화		1	
		이동전화		5	
		인터넷전화		5	
	후불카드	과금단위		3	
		시내전화		1	
		시외전화		1	
		이동전화		5	
		인터넷전화		5	
	수신자부담	과금단위		3	
		시내전화		1	
		시외전화		1	
		이동전화		15	
		인터넷전화		10	
통신사 능력(20)	해당지역 회선구성 능력		설치계획의 적절성 *격오지 설치 가능여부 포함	5	• 분야별 제시한 내용 수준 평가 * 수(100%),우(90%),미(80%), 양(70%), 가(60%), 누락(0%) * 동일 등급 가능 * 미제시에는 점수 미부여
			조직 및 투입인력 적절성	3	
	유지보수 능력		전담유지보수 인원보유	3	
			콜센터 운영능력	3	
	통화품질		정기예방점검 체계	3	
			고장지원체계	3	
통신 서비스(20)			청결한 전화기(부스) 관리	5	• 수(100%),우(90%),미(80%), 양(70%), 가(60%), 누락(0%) * 동일 등급 가능 * 미제시에는 점수 미부여 • IC카드는 사용보장/전환계획 제시 중 선택 점수 부여
			전화기(부스) 파손시 대책	5	
			부스내 편의시설	5	
			IC카드 사용보장	3	
			IC카드 전환계획제시	1	
			장병 복지를 위한 발전방안	2	

공중전화 사업자 선정 평가표(영상)

평가요소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계				100	
통신요금(60)	선불카드	과금단위	• 과금단위 : 시내/시외, 이동전화/인터넷전화 사용시 과금단위(초)를 평가 • 요금 : 시내/시외, 이동전화/인터넷전화 사용 요금을 계산식으로 평가 * 저렴한 요금이 고득점	3	• 과금단위 : 최단시간 제시한 업체를 기준으로 단위시간 평가 * 초당 감점(-0.1점) *적용 예) - 최소 시간제시 업체 기준(3초) - 5초 제시 업체는 -0.2점 감점 • 요금 : 업체제시 최저요금을 1초 기준으로 계산식 적용 * 계산식 = 배점×최저요금 / 해당업체 제시요금 * 적용 예) : 후불카드 이동전화 -A업체(2원): 60×2원/2원=60점 -B업체(3원): 60×2원/3원=40점 -C업체(4원): 60×2원/4원=30점 * 미제시에는 점수 미부여
		시내전화		1	
		시외전화		1	
		이동전화 음성		2	
		이동전화 영상		2	
		인터넷전화		4	
		문자		2	
	후불카드	과금단위		3	
		시내전화		1	
		시외전화		1	
		이동전화 음성		2	
		이동전화 영상		2	
		인터넷전화		4	
		문자		2	
	수신자부담	과금단위		3	
		시내전화		1	
		시외전화		1	
		이동전화 음성		5	
		이동전화 영상		10	
		인터넷전화		10	
통신사 능력(20)	해당지역 회선구성 능력		설치계획의 적절성 *격오지 설치 가능여부 포함	5	• 분야별 제시한 내용 수준 평가 * 수(100%),우(90%),미(80%), 양(70%), 가(60%), 누락(0%) * 동일 등급 가능 * 미제시에는 점수 미부여
			조직 및 투입인력 적절성	3	
	유지보수 능력		전담유지보수 인원보유	3	
			콜센터 운영능력	3	
	통화품질		정기예방점검 체계	3	
			고장지원체계	3	
통신 서비스(20)			청결한 전화기(부스) 관리	5	• 수(100%),우(90%),미(80%), 양(70%), 가(60%), 누락(0%) * 동일 등급 가능 * 미제시에는 점수 미부여 • IC카드는 사용보장/전환계획 제시 중 선택 점수 부여
			전화기(부스) 파손시 대책	5	
			부스내 편의시설	5	
		IC카드	사용보장	3	
			전환계획제시	1	
			장병 복지를 위한 발전방안	2	

별표 #2

협 정 사 항

제1조(목적) 본 협정은 군 음성 공중전화 설치·운영 및 관리에 있어 협정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일반업무에 관한 협정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군지휘통신사령부과 000은 본 협정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업관리실을 “발주기관”이라고 한다.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사업협정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협정상대방”이라 한다.

③ 격오지라 함은 독립중대 이하, 중계소, 방공진지, GP, R/S, 단독 TOD 등을 말한다.

제 3조(협정대상) 공중전화 설치·운영 및 관리대상은 아래와 같다.

부대명	설치수량	비 고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음성 248대 영상 162대	격오지 포함

제 4조(협정 기간)

공중전화 협정 기간은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공중전화 및 부스의 설치)

① “협정상대방”의 업체별 공중전화 설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단일업체에서 설치하고, 세부장소는 해부대장이 결정한다.

② “협정상대방”은 사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적통화 보장대책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 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공중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중전화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협정상대방은 옥내 및 옥외 부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중전화 설치 간 부대의 영내 통신시설물(군의 케이블, 관로 등)을 사용할 경우 설치 부대로 협조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는 통신요금 인하에 적용하며 무상으로 한다. 신규 설치로 인한 케이블 등 추가 공사 일체는 “협정상대방”이 시행하고, 추가 공사 간 구성경로, 방법 등은 해당 부대와 협의하여 설치하며, 미관(美觀)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⑤ 해당부대가 위치별로 설치 수량을 제시하면, “협정상대방”간 상호 협의를 통해 해당 장소에 설치한다.

⑥ “협정상대방”이 기존 설치된 사업자일 경우 이미 설치된 전화기 중 노후 된 전화기(부스포함) 또는 설치 대상부대에서 교체를 원하는 전화기는 새 전화기(부스포함)로 교체하여 설치한다.

⑦ 신규 선정된 “협정상대방”은 공중전화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기존 사업자의 전화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설치 및 철거 시기는 기존 사업자, “발주기관”과 협의 하 진행한다.

⑧ 공중전화 설치시기는 병사 휴대폰 시범사용시기와 연계하여 설치한다.

제6조(설치수량)

① 설치수량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수량을 적용한다.

② 부대 운용상 추가되는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7조(요금체계)

① 사업주체별 협정 체결 후 “협정상대방”의 낙찰된 최저 요금을 사업자가 참여한 전군 공중전화 설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전군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② “협정상대방”은 협정 체결일로부터 협정기간 만료시까지 요금체계 변동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는 전군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에 따라 “협정상대방”이 협정체결한 부대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협정상대방”은 해당 부대에 방식별 통화요금(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수신자 부담전화, 할인혜택 등)을 사용자 식별이 용이한 곳에 스티커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임무)

① “발주기관”은 협정서에 의하여“협정상대방”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정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협정상대방”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협정상대방”은 해당 협정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협정이행의 전 ·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9조(편의제공) “발주기관”은 원활한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가용한 범위에서“협정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전력(電力)을 제공하고 월 단위 사용량에 대해 정산하며, “협정상대방”은 정산된 전력사용 금액을 지불한다.

제10조(설치지체, 하자보수, 고장수리 지연 등에 대한 조치)

① “협정상대방”은 공중전화를 병사 휴대폰 시범운용 시기로부터 90일 이내에 설치하고, 설치 완료 후 2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설치결과를 보고한다.

② 부대개편, 병영생활관 공사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협정상대방”은 협정한 설치 기한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정상대방”은 즉시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대이전, 부대운용 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중전화 이전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전 비용을 무상 지원하고, 부대해체 등의 사유로 공중전화의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철거 또는 이설한다.

④ 설치 후 공중전화 및 부스가 협정 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협정상대방”에게 통지하여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서비스 지원) “협정상대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중전화기 설치장소의 이전 요구시

② 공중전화 부스 훼손, 노후로 인한 교체 요구

③ 고장 및 통화품질 저하로 인한 고장수리 요구

④ 기타 공중전화 사용자간에 불편함으로 인한 서비스지원 요구

⑤ 부대 개편, 증 · 창설 등의 사유로 이전 및 해지 요구

제12조(협정의 해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협정상대방”과의 협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제7조 제1항 미이행시 및 “협정상대방”과의 공중전화 요금체계를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협정상대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공중전화 및 부스의 훼손, 노후로 인한 교체 또는 수리 지연, 통화품질 저하에 대한 조치를 지체한 경우

③ “협정상대방”이 제16조에서 정한 보안 및 출입통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기타 사용자의 불편사항 누적 및 “협정상대방”의 협정 불이행 사항이 발생하여 육군(발주기관)이 협정체결부대에 건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자를 재선정 한 경우

⑤ 사용부대의 사유(부대이전, 신 막사준공 등) 없이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협정상대자가 협정을 포기한 경우

⑥ “협정상대방”이 제안서상에 명시한 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제12조-1(협정 해지 후 조치)

① 설치 기간 내에 설치하지 못한 경우 협정을 파기할 수 있으며, 협정 파기시 이미 설치한 전화기는 “협정상대방”이 1개월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② “협정상대방”중 협정을 파기하거나 위 제1항에 따라 협정이 파기되면 협정 파기 사업자의 설치물량은 다른 “협정상대방”에게 균등 배분한다.

제13조(철거의무)

① “협정상대방”이 협정사항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협정을 불이행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정상대방”은 즉시 공중전화 일체를 철거해야 하며 철거 비용은 “협정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② 협정기간이 만료되고 재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협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협정상대방”은 해당 공중전화 및 부스를 철거해야 하며 철거비용은 “협정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정비의무)

“협정상대방”은 공중전화의 외형상 파손 및 통화품질 저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부대로부터 하자발생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공중전화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요청부대는 인원 및 차량 출입 조치 등 “협정상대방”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5조(보안 및 출입통제)

① 신규 설치되는 공중전화는 안보지원사령부의 보안측정 실시 후 운용 가능하다.

② 무선 및 인터넷 기반 공중전화 설치는 국방부 보안측정 결과를 사업 전에 제출하고, 장비 설치 후에는 안보지원사령부의 보안측정 실시 후 운용 가능하다.

③ 무선 및 인터넷 기반 공중전화는 전송장비, 네트워크 장비, Wi-Fi, 무선랜 등과 연동 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협정상대방”은 “발주기관”의 장비 및 기타 사항과 관련된 보안 내용 일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유출 또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협정상대방” 및 의무 위반 해당 관계자는 연대하여 그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협정상대방”의 인원이 사용부대의 지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출입 2일전에 사용자 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부대출입 인원은 사전(2일전)에 통보되어 승인된 자로 한하며 인원 및 차량은 사용부대 요원의 통제와 안내를 받는다.

제16조(협정서 이행여부 평가)

부대별 운영위원회에서 연말 단위 협정서 이행여부, 서비스 제공 상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이 “협정상대방”에게 조치토록 할 수 있으며, 미 이행시 협정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책임 및 관할법원)

① 본 협정과 관련, “협정상대방”이 협정 불이행 또는 시설공사 및 기타 부정당한 행위 등으로 육군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육군은 “협정상대방”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정상대방”은 이에 따라 소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본 협정에 관련된 소송의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Ⅶ 첨 부

#1. 각 서

#2. 위 임 장

#3. 일 반 현 황 및 연 혁

#4. 자 본 금 및 매 출 액

#5. 본 과업 수행조직 및 인원투입계획

#6. 보 안 서 약 서

#7. 보 안 확 인 서

#8.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확인서

#9. 착 수 계

첨부 #1

각 서

1.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모집 공고한 공중전화 설치·운영 제안요청서의 제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심사시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향후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감수한다.

2. 사업자 선정 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자료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본 제안서 제출로 각 부대와 旣 체결된 협정 및 협정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미 선정될 경우 군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을 인정하며, 국군지휘통신사령부(각 국직부대)에서 제시한 기준일 내에 철거하는데 동의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9년 월 일

업체명 :

대 표 : (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귀하

첨부 #2

위 임 장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직 위 :
○ 담 당 업 무 :

본인은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아래에 표시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대리권한 :_____에 대한 사무

2019.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귀하

첨부 #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주요연혁

첨부 #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			
		○○○			
		○○○			
		○○○			
		○○○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협정일 경우에는 협정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협정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 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첨부 #5

본 과업 수행조직 및 인원투입계획



분야별 참여기술자	성명	직위	자 격	경력	비고

1. 사업책임기술자는 사업을 총괄하여야 하며, 팀별 책임기술자와 중복할 수 없음
2.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필요한 경우 기입
3.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시기 바람.
4. 공동도급시 각 사별 도급비율에 맞게 작성
5. 경력은 해당 종사기관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및 관련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첨부 #6

보 안 서 약 서(사업자 제출용 양식)

(전 면)

본인은 2019년 월 일부로 (국직부대의 공중전화설치)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취급하는 군사사항(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사항(비밀)을 보호한다.
2. 나는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이외의 군사사항(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문서 · 구두 등)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 행위임을 명심하고 사업 기간 중 업무상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다음의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벌칙)
5. 나는 허가되지 않은 개인용 정보통신장비를 부대의 통제구역이나 비밀회의장소 등 부대보안예규에 명시된 반입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으며, 보안관계관의 보안점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6. 나는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거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정보통신장비(스마트폰 등)를 부대 내 PC에 임의로 연결하거나,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전 승인 없이 UCC 등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트위터 · 페이스북 등의 SNS, 블로그(개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군사사항을 게시하지 않겠다.
7. 나는 보안조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장비(휴대폰·PC·차량 블랙박스 등) 사용내역 확인 등 모든 과학조사기법에 협조하겠다.

2019년 월 일

서약자 소속회사 (업체명/연락처)

직급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후 면)

1. 군사기밀보호법
   - 제10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불이행) :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 제11조(탐지수집) : 부당한 방법의 탐지, 수집 10년 이하의 징역
   - 제12조(누설) : 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13조(업무상 누설) :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시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14조(업무상 과실누설) : 과실 누설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제16조(신고 제출의 불이행) : 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국가보안법
   - 제4조(목적수행)
     -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시
       ①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 · 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② 기타의 국가 · 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 국가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시는 3년 이상 유기징역

3. 형 법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공무원인 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4. 군형법
   -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제24조(벌칙)
     -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출입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물 임의 촬영 및 묘사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첨부 #7

보 안 확 인 서(사업자 제출용 양식)

본인은 _____업체 대표로서,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협정한 공중전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진행 간 국직부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복사본 포함) 일체를 반납 또는 삭제(소거)하였으며, 본인을 포함한 회사 전 직원(참여업체 인원 포함)이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붙 임 : 1. 반납자료 목록 1부

2. 삭제/소거 자료 목록 1부. 끝.

2019 년 월 일

확약자 : ㈜ 대표이사 (직인)

첨부 #8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확인서(사업자 제출용 양식)

본인은 _____업체 대표로서,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협정한 국직부대 공중전화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진행 간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확약자 : ㈜ 대표이사 (직인)

첨부 #9

군 공중전화 설치 및 운용사업 착수계(사업자 제출용 양식)

군 공중전화 설치 및 운용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협정일	년 월 일
계 약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을 본 협정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 1. 보안서약서(붙임#6) 1부

2. 보안확인서(붙임#7) 1부

3.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확인서(붙임#8) 1부

4. 사업수행계획서 1부

사 업 자 직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귀하